

이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제정 2023· 8· 14 조례 제19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에 위치한 육군 제55사단 제171여단 예비군훈련장(천덕봉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예비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자로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이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